

의안번호	제 33호
의결(보고) 년 월 일	1995. 12. 28. (제 40 회)

의결사항	인 가 결
------	-------------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5. 12. 18.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5. 12. 18.

의안
번호

323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군민의 청소행정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경우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 나. 쓰레기봉투에 담지않고 배출할 수 있는 폐형광 전구와 파손유리의 량을 1킬로그램 미만으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다. 공동주택 건립 및 배출시설설치 공장에서의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4조제5항)
- 라.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따라 쓰레기봉투 종류를 일반용봉투 중 기존 타종용과 방문용에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변경하며 사업장 봉투의 가격을 새로이 정하고 가정용(문전수거용) 봉투는 기존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방문용 봉투의 가격을 적용함.(안 제9조제3항, 별표2)
- 마. 과태료 부과시 독촉장 발부일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서 20일 이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납부 영수증 도달이 늦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안 제26조제2항)
- 바.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기준중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25천원에서 3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범죄 처벌법의 부과금액과 부합되게 함.(안 별표5)

사. 쓰레기봉투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30ℓ와 75ℓ를 추가제작함으로써 용량을 다양하게 하여 국민에게 편의 제공.(안 별표1)

아.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수납부 서식 내용증 위반행위 기재란을 신설하여 불법투기자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함.(안 별지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경범죄처벌법시행령개정('95.4.1)

나. 쓰레기처리비 자립도 현실화 추진 권고(도 환경67501-771 → '95. 10. 9일)

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결정('95. 6. 26) → 고성군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3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③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간,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한다.

제4조1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단,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 미만의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3항 중 "색깔은 일반용중 타종용은 엷은흰색, 방문용은 엷은노란색, 공공용은 엷은청색으로 한다"를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노란색, 사업장용은 엷은청색으로하고 공공용은 엷은흰색으로한다."로 한다.

제26조2항 "7일이내"를 "20일이내"로 한다.

[별표1]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용량 (ℓ)	용도
5	일반용 (가정용)
10	일반용 (가정용, 사업장용)
20	일반용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용 량 (ℓ)	용 도
30	일 반 용 (가정용, 사업장용), 공 공 용
50	일 반 용 (가정용, 사업장용), 공 공 용
75	일 반 용 (가정용, 사업장용), 공 공 용
100	일 반 용 (가정용, 사업장용), 공 공 용

※비고 (현행과 같음)

[별표2]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단위 : 원)

용 량	구 분	일 반 용 봉 투 공 급 가 격		
		공 급 액	판매수수료	판 매 액
5 ℓ	가정용	84	6	90
10 ℓ	가 정 용	160	10	170
	사업장용	210	10	220
20 ℓ	가 정 용	305	25	330
	사업장용	405	25	430
30 ℓ	가 정 용	460	40	500
	사업장용	620	40	660
50 ℓ	가 정 용	755	55	810
	사업장용	1,035	55	1,090
75 ℓ	가 정 용	1,150	80	1,230
	사업장용	1,580	80	1,660
100 ℓ	가 정 용	1,518	112	1,630
	사업장용	2,068	112	2,180

[별표5] 의 1항 가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25"를 "30"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통지서번호"를 "고지번호"로 하며 "이의 제기란" 다음에 "위반행위"란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종류 및 가격의 변경 사항은 '9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구입당시 가격에 맞추어 새로운 봉투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신 설)	<p>제3조 ③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간,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한다.</p>
<p>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폐형광전구 및 파손 유리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p>	<p>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단, 폐형광전구 및 파손 유리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 미만의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p>
<p>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현 (신 설)
<p>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u>색깔은 일반용중 타종용은 엷은흰색 방문용은 엷은노란색, 공공용은 엷은청색으로 한다.</u></p> <p>제26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p> <p>① (생 략)</p> <p>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u>7일이내에</u>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p>

개 정
<p>⑤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색깔은 <u>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노란색, 사업장용은 엷은청색으로하고 공공용은 엷은흰색으로 한다.</u></p> <p>제26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20일이내에</u></p>

현 행

여야 한다.

[별표1]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용량 (ℓ)	용도
5	일반용 (<u>타종용, 방문용</u>)
10	일반용 (<u>타종용, 방문용</u>)
20	일반용 (<u>타종용, 방문용</u>)
50	일반용 (<u>타종용, 방문용</u>), 공공용
100	일반용 (<u>타종용, 방문용</u>), 공공용

※비고 (생략)

개 정

[별표1]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봉투용량 (ℓ)	용도
5	일반용 (<u>가정용</u>)
10	일반용 (<u>가정용, 사업장용</u>)
20	일반용 (<u>가정용, 사업장용</u>), 공공용
30	일반용 (<u>가정용, 사업장용</u>), 공공용
50	일반용 (<u>가정용, 사업장용</u>), 공공용
75	일반용 (<u>가정용, 사업장용</u>), 공공용
100	일반용 (<u>가정용, 사업장용</u>), 공공용

※비고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단위 : 원)

용 량	구 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5ℓ	타 종 용	64	6	70
	방 문 용	84	6	90
10ℓ	타 종 용	120	10	130
	방 문 용	160	10	170
20ℓ	타 종 용	245	25	270
	방 문 용	305	25	330
50ℓ	타 종 용	615	55	670
	방 문 용	755	55	810
100ℓ	타 종 용	1,248	112	1,360
	방 문 용	1,518	112	1,630

개 정

[별표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단위 : 원)

용 량	구 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액
5ℓ	가 정 용	84	6	90
10ℓ	가 정 용	160	10	170
	사 업 장 용	210	10	220
20ℓ	가 정 용	305	25	330
	사 업 장 용	405	25	430
30ℓ	가 정 용	460	40	500
	사 업 장 용	620	40	660
50ℓ	가 정 용	755	55	810
	사 업 장 용	1,035	55	1,090
75ℓ	가 정 용	1,150	80	1,230
	사 업 장 용	1,580	80	1,660
100ℓ	가 정 용	1,518	112	1,630
	사 업 장 용	2,068	112	2,180

현

행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기준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생략)	50	50	50
	다. (생략)	100	100	100
	라. (생략)	200	200	200
	마. (생략)	500	500	500

개

정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부과기준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현행과 같음)	50	50	50
	다. (현행과 같음)	100	100	100
	라. (현행과 같음)	200	200	200
	마. (현행과 같음)	500	500	500

[별지 제7호서식]

○ 현 행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통지서 번호	③ 과태료처분 통지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

○ 개 정

과 태 료 수 납 부											
① 구지 번호	② 과태료처분 통지	③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⑥ 금액	납부의무자		⑨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⑫ 위반 행위
			④ 당초	⑤ 독촉		⑦ 성명	⑧ 주소		⑩ 이의제기일	⑪ 법원통보일	